

예 산 총 칙

2013년도 추경 3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68,283,284	29,048,499
일반회계	805,479,269	24,164,378
특별회계	162,804,015	4,884,120
공기업특별회계	81,465,396	2,443,96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8,363,999	1,150,92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3,101,397	1,293,042
기타특별회계	81,338,619	2,440,159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16,564,225	496,927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340,763	160,223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492,915	44,787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083	92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45,126,673	1,353,800
주택사업특별회계	2,590,888	77,72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66,830	32,005
기반시설특별회계	1,239,413	37,182
경영사업특별회계	150,000	4,500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	2,515,033	75,451
주차장특별회계	5,248,796	157,464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8,337,132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3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8,373,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 한다.